

「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」 참여기업 통합 모집공고

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경기도 특화 마을기업 모델 발굴 및 경영안정화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및 마을기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「2025년 마을기업 지역특화 사업」 및 「2025년 마을기업 경영안정화 사업」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3월 4일
경 기 도 사 회 적 경 제 원 장

『2025년 마을기업 지역특화 사업』 참여 컨소시엄 모집 공고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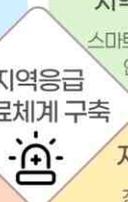
1 사업개요

□ 사업내용

- 사업명: 2025년 마을기업 지역특화사업
- 사업목적: 다양한 지역특성에 따라 공동체성 및 공공성을 강화한 경기도형 마을기업 연합모델 발굴
- 사업기간: 협약체결일 ~ 2025년 12월 31일까지
- 지원규모: 경기도 (예비)마을기업 주관 컨소시엄 5개소 내외
- 지원내용: 지역특화모델 실행 사업화 지원(최대 50,000천원~최소 30,000천원 차등지원*)
- * 최종심사 결과에 따라 컨소시엄별 지원비가 차등지원되며, 지원규모(개소 수)도 변경될 수 있음
- 지원대상: 경기도 (예비)마을기업 주관 컨소시엄 **※마을기업 필수구성**

【 마을기업 지역특화모델이란? 】

- (정의) 지역(마을)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, 마을기업이 주도하여 지역의 다양한 주체(주민자치회,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지역 유관기관, 지역 사회적경제조직, 지역 정책입안자 등)와 함께 지역(마을)문제 해결 비즈니스를 실험해보는 프로젝트 모델
- (사례)

구분	돌봄문제해결형	농산어촌형
사업 모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문제) 지역소멸 및 고령화 확대 · (모델) 응급사항 대응 및 노인돌봄 체계구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문제) 청소년 야삼사 결식 및 농산물 과잉생산 · (모델) 청소년 아침 간편식 메뉴 개발
협업 구조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의료복지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건강검진, 재택의료, 건강프로그램 등</p> </div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지역병원 및 IT기업 스마트 워치(간급구조번호) 연계 원격 응급시스템</p> </div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: 10px 0;">  <p>지역응급 의료체계 구축</p> </div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마을기업 및 주민자치회 마을주민 영양관리 지원, 병원동행, 건강강좌 등</p> </div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지자체(시/군/구) 정책사업 연계를 통한 지역의료 접근성 강화</p> </div> </div>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농산물 가공 및 생활협동조합 지역 농산물 재료 및 유통경로 확보</p> </div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청년공동체 및 청소년문화복지원 수요조사 및 시장조사를 통한 사업 영역 확장</p> </div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: 10px 0;">  <p>먹거리 통합 돌봄체계 구축</p> </div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상품기획 및 개발, 상품화 진행</p> </div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시청/교육청/학교 안성시 공공급식팀 정책연계 (농축산유통과, 농촌 신활력센터, 시범학교, 학부모회 등)</p> </div> </div>

□ 사업 추진일정

모집공고	사업설명회	의제 심사	사전 라운드테이블	최종심사 및 선정
참여 컨소시엄 모집 3. 4.(화)~3. 28.(금)	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3. 13.(목)~3. 14.(금)	서면심사 및 발표 ~4. 8.(화)	사전문제 정의 협업전략 논의(3회) 4~5월 중	전문가 심사 및 상호평가 5월 중
결과보고	중간점검	특화모델 실행	협약체결	사후 라운드테이블
정산 및 결과보고 12월 중	의제 해결방안 도출 점검 8월 중	사업비 교부 및 프로젝트 수행 6~11월	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협약체결 5월 중	프로젝트 구조화 사업계획서 도출(2회) 5월 중

□ 라운드테이블 운영(안)

【 라운드테이블이란? 】

- (정 의) 경기도 내 지역(마을)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각자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하여, 해결방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프로그램
- (신청분야) ① 농산어촌형(돌봄/교육/편의) ② 도농복합형(교류/격차해소) ③ 자유제시형(공동마케팅 등) ④ 북부사회문제해결형(지역소멸/고령화 등)

구분	사전 라운드테이블			사후 라운드테이블	
	1회차	2회차	3회차	4회차	5회차
내용	· 문제현황 분석 · 발굴의제 수립 · 공동사업목표 설정 · 협력체계 논의	· 핵심활동 도출 · 인력 및 자원 논의 · 예산내역 산출 · 성과측정방법 논의	· 프로젝트 발표 · 상호평가 진행	· 의제 구조화 · 실행전략 구체화	· 실행계획서 수립 · 자원(예산)분배 검토 · KPI 논의
결과물	· 자원조사 분석보고서 · 핵심의제(안)	· 사업실행계획서 · 예산내역서 · 비즈니스모델캔버스	· 발표자료(PPT) · MOU 협약서 등	· 최종 사업수행계획서 · 최종 예산산출내역서	

※ 라운드테이블 참여조건 및 가산점 부여 안내

- 마을기업 컨소시엄 구성원(주관기관 1인이상, 참여기관 1인이상) **필수 참여**
- 사전 라운드테이블 구성원 참석률 95%이상인 경우 **가점(5점) 부여**

2 모집내용

□ 모집대상

○ 신청자격 : 경기도 (예비)마을기업 주관 컨소시엄 **※라운드테이블 필수참여**

※ 2024년 특화모델 발굴사업 및 마을 동반성장사업 주관기관의 경우, 재지원 불가

※ 해당사업 주관기관으로 직접 지원 받을 경우,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타 사업 중복지원 불가

« 중복지원 제한 안내 »

2025년 마을기업 지역특화사업	2025년 마을기업 경영안정화사업	2025년 본원 타 지원사업	2024년 특화모델 발굴 및 마을 동반성장사업 주관기업
주관기관(기업)	지원불가	지원불가	지원불가
참여기관(기업)	지원가능	지원가능	지원가능

○ (컨소시엄 구성) 주관기관은 참여기관과 함께 **컨소시엄 필수** 구성

- 주관기관(마을기업) + 참여기관(2개 이상)

○ (컨소시엄 요건)

① **주관기관은 (예비)마을기업이어야 함**

② 참여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*, 마을공동체, 주민자치조직, 지역NGO, 지역 자영업자·소상공인, 교육기관, 공공기관 등 **2개 이상 조직**으로 구성해야 함

* 사회적경제조직은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2조 3호 가항~바항에 근거

- 참여기관(기업) 모두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, 법인등록증, 사업자등록증·고유번호증 등 제출하여야 함

※ 컨소시엄 연계 및 가산점 부여 안내

- 문제해결에 필요한 서비스 및 상품 제공 참여기관(기업)이 해당지역에 없을 시, 경기도 내 타 지역 기관(기업)과 연계할 수 있음

- 지역 정책에 부합할 만한 공공조직이 있을 경우(협약서 및 계약서), 최종심사 시 **가점(10점)부여**

○ 신청제외 대상 ※컨소시엄 참여기관(기업) 모두 해당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▶ 예외 대상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
▶ 예외 대상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

1. 「국세징수법」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시행령 제43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

▶ 지원제외 대상 업종(대상 업종의 코드번호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)

1. 일반유희주점업(코드번호세세분류 : 56211)
2. 무도유희주점업(코드번호세세분류 : 56212)
3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코드번호세세분류 : 91249)
4. 그 밖에 1~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④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에 동일 사업계획으로 동일연도에 중복선정된 자(기업)

- 타 사업 내,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및 지역특화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제외
- 교육, 컨설팅 등 민간사업지원금(자금) 지원 이외의 간접 제공되는 경우 제외
- 하단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중복지원 불가

▶ 중복지원 불가 사업

1. 2024년 특화모델 발굴사업 및 마을 동반성장사업 주관기관
* 주관기관이 아닌 참여기관이었던 경우, 지원가능하나 동일사업 내용으로는 지원불가
2. 2025년 경영안정화사업 참여기업
* 해당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원할 경우는 타 사업 지원 가능

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우리은행 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(기업)

⑥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
⑦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
⑧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·법인이거나 특정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관·단체

⑨ 기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(예 사회적물의 등)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⑩ 당해년도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타 기관(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기관 등)의 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기업 및 기관

□ 신청분야

분 야	세부 내용	제안 프로젝트 예시
농산어촌형	고령화 및 주민 분산거주로 야기되는 돌봄 교육문제, 편의 서비스 제공	· 농어촌 지역개발 프로그램(마을기업 영양간식사업, 지역학생 문화·교육지원 등)
도농복합형	도시 농촌 간 교류 프로젝트 및 지역 간 격차 해소, 문화가정 등 도농격차 해소를 위한 주제	· 도시지역의 다양한 마을기업 교육서비스를 농촌지역 취약계층에 제공, 구도심 전통시장 물품을 신도심 배달체계 구축 등
자유제시형	경기도 내 마을기업 공동성장을 위한 자유제시형	· 마을기업 공동비, 공동꾸러미 제작, 지역 공동 마케팅, 네트워크 사업 등
북부사회문제 해결형	<p>북부지역*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제</p> <p>* 가평, 고양, 구리, 남양주, 동두천, 의정부, 양주, 연천, 파주, 포천</p> <p>※ 주관기관(기업)이 북부 소재기업이어야 함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제예시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북부 지역소멸(고령화 등)에 대응하는 지역 서비스</p> <p>· (예시) 찾아가는 마을주치의+마을꾸러미+ 마을서비스 ⇒ 응급상황 대응 핫라인 구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) 기초검진, 건강상담, 한방진료, 만성질환, 치매인지도 검사 - (마을기업제품) 건강식품 꾸러미 제공사업 - (마을생활서비스) 병원동행, 집수리, 방문미용서비스

3

신청방법

□ 신청방법

- (접수기간) 2025. 3. 4.(화) ~ 3. 28.(금) 17:00까지 ※ **접수 마감시간 도착분까지 유효함**
- (접수방법)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홈페이지(www.gsic.or.kr) 회원가입 후 신청

□ 제출서류

- (신청서식)

연번	제출 서류	비고
1	[서식1] 사업신청서 1부	주관기관(기업) 각 1부
2	[서식2] 지역문제 해결 제안서 1부	
3	[서식3] 주관기관(기업) 현황 1부	
4	[서식4]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·이용·활용 동의서 1부	
5	[서식5]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	
6	[서식6] 기업의 범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인서 1부	
7	법인등기부등본[말소포함], 고유번호증,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1부	
8	사업자등록증 1부	
9	지방세,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	
10	재무제표(2024년) 1부 ※ 2025년도에 설립한 경우, 가 결산한 재무제표 제출	
11	기타 가점사항(협약서 등)	

○ 접수 유의사항

- 제출서류는 지정된 신청 서식에만 작성하여야 하며, 그 이외의 양식은 심사 과정 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- 제출서류 미비 시, 지원 및 심사 대상에 제외될 수 있음
- 제출서류 8~9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, 10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
- 사경원 홈페이지에 1~11번 서류를 순서대로 취합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
- 신청서류의 내용 중 허위 기재, 누락 등으로 선정을 취소하거나 선정 이후에도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 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귀속됨

4

선정절차 및 기준

□ 선정절차 ※일정 변동 가능성 있음

사업 공고모집	의제 심사	사전 라운드테이블	최종 심사	최종 선정 및 사후 라운드테이블
공모접수	의제 서면 심사 (5개소 내외)	사전문제 정의 협업전략 논의	전문가 심사(80%) 상호평가(20%)	프로젝트 구조화 및 사업계획서 도출
3. 4.(화)~28.(금)	~4. 8.(화)	4월 중	5월 중	5~6월

※ 서류심사 대상자가 1.5배수 이하인 경우(7개소 이하)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서면심사 생략, 서류 미비¹⁾를 제외하고 적격검토로 아이디어 선정 예정

□ 심사기준 ※최종 심사 기준이며, 합산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선정

항 목	심사 내용	배 점
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	①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? ② 민간 네트워크 및 지자체 등 지역과의 협업체계가 잘 구축되어있는가?	10점
도민체감 사업	① 제안사업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? ② 제안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가 지역사회가 공감할 만한 것인가?	10점
사업계획의 적정성	① 사업목표와 계획이 적정하고 연계가 잘 되어있는가? ② 지원을 통해 해당기간 내 핵심성과지표가 측정가능하고 달성 가능한가?	30점
예산타당성	① 예산설계는 타당한가? ② 예산구성의 항목이 적합하며, 시장가격에 비해 적절한가?	20점
사업수행능력	① 마을기반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 및 자원 연계 역량이 있는가? ② 사업실행을 위한 역량(컨소시엄 인력, 네트워크, 경험 자원 등)을 갖추고 있는가? ③ 지원 후에도 추후 자립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?	30점
합 계		100점
최종심사 가 점	① 사전 라운드테이블 참석을 95%이상 (마을기업 포함 컨소시엄 구성원)	5점
	② 지자체 관련 부서 참여 여부 (협약서 및 계약서 첨부 시)	10점

1) 모집 기한 내,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

□ 선정발표

- (의제심사) 사업신청자 대상 4월 중 개별 안내 예정
- (최종심사) 사전 라운드테이블 참석자 대상 5월 중 개별 안내 예정

5 선정기업 행정사항

□ 사업수행계획서 제출

- 최종심사 합격자 대상, 사후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세부적인 사업수행계획서 수립
- 사업수행계획서, 예산산출내역서, 컨소시엄 협업전략, 가점사항 증빙자료 등

□ 최종결과보고서 제출

-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(영수증 사본 포함 지출증빙서류)
- 보고서 및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디지털 파일형태 및 원본 제출
- 잔여 사업비 및 결산이자 전액은 반납
- 주관기관은 사경원과 충분한 상의 후 사업추진 및 성과를 도출하여야 함
- 제출 기한 : 사업종료 후 10일 내

6 기타사항

□ 유의사항

- 사업 자원에 관심 있는 컨소시엄 주관기관(기업)이 요청할 경우 사업내용 및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방문 상담 가능
-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미지급
- 전체 프로젝트를 반드시 11월까지 완료할 필요는 없으나, 지원금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2025. 11월까지 종료되어야 함
-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「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」 고시에서 정한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, 과태료 부과 등 법 위반 확정 판결 확인 시(1회 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
※ 경기도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기준

-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⑥ 폐기물관리법
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등

- 심사 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
- 사업신청서·사업계획서 등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것이 드러날 경우, 관련 법에 따라 **형사처벌 및 보조금 중단 · 환수조치**
-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**중간점검과 최종결과보고**(보조금 정산포함)를 실시하여,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**전액 환수 조치**
- 동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「2025년 마을기업 지역특화사업 세부추진계획」에 따름

□ **2025년 마을기업 지역특화사업 문의처**

-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성장도약팀 조문영 주임
 - (이메일) mycho@gsic.or.kr
 - (유선) 031-258-3288

붙임 「2025년 마을기업 지역특화사업」 신청서식

「2025년 마을기업 지역특화사업」 신청 서식

- [서식1] 사업신청서 1부
- [서식2] 지역문제 해결 제안서 1부
- [서식3] 주관기관(기업) 현황 1부
- [서식4]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·이용·활용 동의서 1부
- [서식5]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- [서식6] 기업의 범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약서 1부
- [별첨1] 사업비 인정/불인정기준 1부
- [별첨2] 협력 협약서(안) 1부

『2025년 마을기업 경영안정화 사업』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

1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마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경영안정화 지원
- 마을기업의 문제해결 진단 및 경영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모색

□ 사업내용

- 사업명: 2025년 마을기업 경영안정화 사업
- 사업기간: 협약체결일~2025. 11. 28.(금)
- 지원규모: 경기도 (예비)마을기업 (10개소 내외)
- 지원내용
 - 마을기업 효율적인 사업운영 및 개선에 관한 맞춤형 지원
 -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 전략기획, 제품 및 품질개선 지원
(①컨설팅(기초/컨설팅) ② 마케팅 분야 ③기술·개발 분야 ④생산·운영분야 등)

【마을기업 경영안정화 사업개요】

- (사업목적) 마을기업의 문제해결 진단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경영안정화 지원
- (주요내용) 기업이 선택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사업 전략, 제품 및 품질개선 등 지원
- (지원대상) 경기도 (예비)마을기업 10개소
- (지원분야) ① 경영개선(회계/품질/시스템) ② 제품개선(인증/시제품 제작지원) ③ 공정개선 등
- (지원사업량) 사업화 지원금 차등지원 20,000천원 × 6개소 / 30,000천원 × 4개소

2

모집내용

□ 모집대상

- 모집기간: 2025. 3. 4.(화) ~ 3. 28.(금) 17:00까지
- 지원금액: 사업비 240,000천원 내 차등 지원
 - 20,000천원 x 6개소 / 30,000천원 x 4개소
 - 신청기업: 자부담 10% 설정필수 (※선정 후 입금확인 후 지원금 배부)
- 모집 제외 대상: 공고일 기준 예비마을기업 지정기간 만료기업은 해당없음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

▶ 예외 대상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
▶ 예외 대상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

1. 「국세징수법」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

▶ 지원제외 대상 업종(대상 업종의 코드번호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)

1. 일반유흥주점업(코드번호세세분류 : 56211)
2. 무도유흥주점업(코드번호세세분류 : 56212)
3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코드번호세세분류 : 91249)
4. 그 밖에 1~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④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에 동일 사업계획으로 동일연도에 선정된 기업

- 타 사업 내,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및 지역특화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제외
- 교육, 컨설팅 등 민간사업지원금(자금) 지원 이외의 간접 제공되는 경우 제외

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우리은행 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기업

⑥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기업

⑦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기업

⑧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·법인이거나 특정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업

⑨ 기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(예 사회적물의 등)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

⑩ 당해년도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타 기관(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기관 등)의 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기업

□ 신청분야 ※ 분야별 3개 이내 지원가능

분 야(선택)		경영안정화 지원사업
① 컨설팅	기초	인사·노무(안전·보건관리), 세무·회계 등
	전문	법무(법제도 및 소송 대응), 경영전략, 사업계획 수립, 사업구조 개선, 사업성과 관리, 기술사업화, 영업전략 등
② 마케팅	브랜딩·디자인	BI 개발, CI 디자인 개발, 상세페이지 개발, 브랜드스토리(슬로건), 제품·포장 디자인 개선 등
	홍보	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 홍보물 제작지원 등
③ 기술개발 (R&D)	제품개발	신규 서비스 제품 기획, 아이템 발굴, 시제품 제작 등
	제품인증	HACCP(안전관리인증기준) 인증 획득 등
④ 생산·운영		생산·품질 관리, 생산설비 관리·보수, 시스템 및 시설구축, 공정개선 등
⑤ 기타		기타 마을기업 운영 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등

○ (예시)

분 야		경영안정화 지원사업(예시)
① 마케팅	브랜딩·디자인	• 디자인 패키지(라벨, 쇼핑백, 병뚜껑, 포장, 박스 등 제작) 개선 / 제품화(진공상품, 티백 등)
	홍보	• 온라인(광고, 영상, 홈페이지 등) 및 오프라인 매체(방송, 신문, 옥외광고, 교통매체, 홍보물 제작 등)를 활용한 제품 홍보지원 등
② 기술개발 (R&D)	제품개발	• 신제품 개발(각종 검사, 인증 및 시제품 제작비) • 기술사업화 기획, 타겟분석, 제품 테스트, 디자인·설계 등
③ 생산·운영		• 유통기한, 제품특징 고려 생산단계 단축 제조·공정 개선 자동화 시스템 구축 - 관련 시장 파악이 가능한 자동화, 기계개발 등 • 경영개선을 위한 프로세스(회계, 물류, 품질관리 시스템 등) 도입 • IoT(Internet of Things)를 이용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구축 (시스템구축, 센서 등)

□ 사업비 집행 공통 유의사항

○ 분야별 유의사항

분 야	유의사항
① 컨설팅	컨설팅 수행일지, 결과보고서(개요, 현황, 문제분석, 추진현황, 목표성과, 종합의견 및 제안 등) 증빙가능해야 함.
② 마케팅	외주용역으로 활용가능, 총 사업비의 50% 이내에서 활용가능. 200만원 이상 집행 시 비교견적 및 검수조서 제출 500만원 이상 집행 시 표준계약 체결
③ 생산·시설	자산비용으로 안되며, 200만원 이상 집행 시 비교견적 및 검수조서 제출 500만원 이상 집행 시 표준계약 체결

※ 최종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운영비 세부 비목 및 비율은 세부사업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○ 사업비 지급제한 및 환수

지급불가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행기업은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행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계존비속, 형제, 자매, 배우자 대표자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 또는 대표자가 재직 중인 기업의 임직원
사업비 환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사업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주관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

○ 사업비 인정 / 불인정 기준

사업비 불인정 공통기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급가액에 한하여 사업비 지원 가능 (부가세 기업 자부담으로 설정) 타행이체 수수료, 서류발급 수수료, 통장 이자발생액 등 지원 불가 해외결제 불가 협약 기간 이전 또는 협약 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사업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 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금액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,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 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해당 금액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수행기업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, 인적·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지원기관 및 지정 회계법인의 증빙서류 제출 요청에 불응한 경우 예산책임자의 결재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

목	세목	내용	
인건비	전담인력비	[비목정의] 보수 및 일용임금	총 사업비 20% 이하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참여 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• 개인별 참여율 100%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때 그 차액 • 참여 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• 대표는 지급불가 	
사업 운영비	일반 수용비	[비목정의]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, 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, 소모성 물품 구입비, 회의비, 공고료 및 광고료, 전문가 활용비(강사 및 컨설팅비)	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3%, 회의비 10% 이하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문구독료, 세차비, 차량 정비 및 보험료, 피복비, 주유비, 범칙금,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업운영비 성격의 경비 •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인쇄물·유인물·안내·홍보 제작 등 • 전자세금 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 • 전문가 활용에 관한 결과 보고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	
	임차료	[비목정의]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, 건물, 시설, 장비, 물품 등의 임차료	총 사업비 20% 이하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• 내부 보유 장비·시설·공간에 대한 임차료(허위 사용 등) 	
	시설 보수비	[비목정의] 사업수행에 필요한 환경개선을 위한 기계장치설비비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해 작업 환경개선 및 공정개선을 위한 공사 등 (단순 인테리어 공사 불가 및 신규 기자재 구입 불가) 	
	홍보비	[비목정의]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홍보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디자인 패키지 개선(포장지, 박스, 쇼팜백 등 제작비 포함) 비용 • 홈페이지 제작, 홍보영상, 홍보물 제작 등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 등 	
	재료비	[비목정의]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	총 사업비 20% 이하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	
국내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비에 의한 국내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 한 경우 • 국내 출장(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)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• 참여인력 외 출장 여비 • 사업장 소재 시·군 내 여비, 시내 교통비(지하철, 버스, 택시 등), 교통카드 충전비 ※ 계획에 따른 출장시 KTX, 항공, 시외버스 등 일반석 이동 수단에만 인정 	-	
연구개발비	[비목정의] 전산개발비, 시험연구비 등 사업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연구개발비	-	
외주용역비	[비목정의]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, 용역 계약을 통하여 일부 공정에 대한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	총 사업비 50%	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산취득성을 일체 불가 	-	

※ 사업운영비 세부 비목은 세부사업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3

신청방법

□ 신청방법

- 신청기간: 2025. 3. 4.(화) ~ 3. 28.(금) 17:00까지
- 접수방법: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홈페이지(www.gsic.or.kr) 회원가입 후 신청

□ 제출서류

○ 신청서식

번호	제출서류	비 고	확인
1	마을기업 경영안정화 사업계획서	[서식1]	<input type="checkbox"/>
2	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	[서식2]	<input type="checkbox"/>
3	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[서식3]	<input type="checkbox"/>
4	기업의 범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약약서	[서식4]	<input type="checkbox"/>
5	지방세,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		<input type="checkbox"/>
6	마을기업 지정서		
7	사업자등록증		
8	법인등기부등본		
9	재무제표(2023~2024)		
기타	외주용역의 경우, 견적서, 비교견적서		

○ 유의사항

- 제출서류는 지정된 신청 서식에만 작성하여야 하며, 이외의 양식은 심사과정 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- 제출서류 미비 시, 지원 및 심사 대상에 제외될 수 있음
제출서류 5의 경우 공고일 이후, 7~8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
- 사경원 홈페이지에 1~9번 서류를 순서대로 취합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
- 신청서류의 내용 중 허위기재, 누락 등으로 선정을 취소하거나 선정 이후에도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 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귀속됨

4

선정절차 및 기준

□ 추진일정

절 차	내 용
↓ 접 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접수일정 : 3. 10.(월) ~ 3. 28.(금) 17:00까지 접수방법 :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홈페이지
↓ 선정 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심사일정 : (1차) 서면심사 3. 31.(월)~4. 1.(화) 심사방법 : 심사위원 온라인 서면 심사 심사일정 : (2차) 대면심사 4. 5.(목) 예정
↓ 최종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발표일정 : 4. 6.(금) 예정 발표방법 :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

※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※ 서류심사 대상자가 1배수 이하인 경우(10개소 이하)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가 심사 생략, 서류 미비²⁾를 제외하고 적격검토로 선정 예정

□ 심사기준 ※ 최종 심사 기준이며, 심사 결과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

심사 내용		배점	
사업의 목적성	①사업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영안정 지원 사업의 필요성 및 문제인식 경영안정화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시급성 	5
	②생태계 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 여부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장에 기여 가능한 사업 여부 	15
	③도민 체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안 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가 지역사회가 공감할 사업인지 여부 도민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체감할 만한 사업인지 여부 	20
사업의 타당성	④공동체성 공공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동체(지역주민)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며 운영에 참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(사업계획 연계성) 	20
	⑤사업계획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목표와 계획이 적정하고 기간 내 KPI 달성 여부 사업실행을 위한 역량(인력, 네트워크, 경험, 자원 등)이 있는지 여부 	30
	⑥예산 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예산구성의 항목들이 적합한가? 예산설계는 타당한가? 	10
합계		100점	

2) 모집 기한 내,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

5

선정기업 행정사항

□ 보고서 제출

- 결과보고서 및 최종정산보고서 (거래내역, 영수증 사본 포함 지출증빙서류)
- 보고서 및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디지털 파일형태로 제출
- 잔여 사업비 및 결산이자 전액은 반납
- 사경원과 충분한 상의 후 사업추진 및 성과를 도출하여야 함
- 제출 기한 : 사업종료 후 10일 내

6

기타사항

□ 유의사항

- 사업 지원에 관심 있는 마을기업이 요청할 경우 사업내용 및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방문 상담 가능
- 날인이 누락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
- 신청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함
- 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,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연락 불가 및 내용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
-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고유권한이며,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
-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**보조금 미지급**
- 사업신청서·사업계획서 등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것이 드러날 경우, 관련 법에 따라 **형사처벌 및 보조금 중단 · 환수조치**
-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**전액 환수 조치**

- 동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「2025년 마을기업 경영안정화사업 세부추진계획」에 따름
- 참여기업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사업 모니터링 위한 현장 방문 시 적극 협조해야 함
- 참여기업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요청하는 성과분석 및 사업평가를 위한 만족도 조사 등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

□ 2025년 마을기업 경영안정화사업 문의처

-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성장도약팀 오건호 대리
 - (이메일) khoh@gsic.or.kr
 - (유선) 031-258-3251

붙임 「2025년 마을기업 경영안정화사업」 신청서식

「2025년 마을기업 경영안정화사업」 신청 서식

[서식1] 사업계획서 1부

[서식2]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·이용·활용 동의서 1부

[서식3]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
[서식4] 기업의 법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협약서 1부